

춘천지방법원 2021. 5. 25 선고 2020가단912(본소), 2021가단469(반소) 판결 [대여금 및
손해배상(기) ·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소송대리인 B

피고(반소원고) C

변 론 종 결 2021. 4. 27.

판 결 선 고 2021. 5. 25.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3.부터 2021. 5.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본소: 주위적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7,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4,12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본소에 관한 판단

가. 본소청구의 요지

1) 주위적 청구

원고는 피고에게 채무이행각서(갑 3-1)에 기한 대여금 3,500,000원과 피고 소유의 의정부시 D 토지의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가 하루에 20만 원의 출장비를 주겠다고 구두로 약정한 바에 따라 21차례의 출장비 4,200,000원 합계 7,7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예비적 청구

출장경비에 관한 약정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에 기한 대여금 3,500,000원과 출장경비 626,000원 합계 4,126,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이 사건 이행각서에 기한 청구 부분

갑 3-1,2의 각 기재에 따르면, 피고는 2019. 5. 9. 원고에게 3,500,000원을 2019. 7. 9.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무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이행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무이행각서에 기한 채무 3,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약정 출장비 청구 부분

원고가 주장하는 출장비 지급약정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본소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출장 경비 청구 부분

갑 7-1~13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부동산 매매를 위한 출장을 요청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설사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출장을 다녀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출장비용이 들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본소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인용금액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이행각서에 기한 채무금 3,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4.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5. 25.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이행각서에 기한 채무는 대여금이 아니라 원고의 처인 B로부터 60,000,000원을 빌리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 들어간 비용에 관한 채무이고, 실제 설정비용도 약 700,000원에 불과하다.

나) 근저당권 설정비용이 700,000원에 불과함에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2회에 걸쳐 그 10배에 달하는 7,000,000원을 받았는바, 이 사건 이행각서의 작성은 피고의 궁박·무경험·경솔로 인하여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여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에 해당하므로 민법 제104조에 따라 무효이다.

2) 판 단

가) 이 사건 이행각서에 기한 채무가 근저당권 설정비용 채무인지 여부

을 1(=을 5)의 기재에 따르면, 의정부시 D 묘지 2,316㎡ 중 피고의 1/5 지분에 관하여 2019. 5. 9. 채권최고액 90,000,000원,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B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이행각서에 기한 채무가 근저당권 설정비용에 관한 채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이행각서의 작성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이행각서에 기한 채무가 근저당권 설정비용에 관한 채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반소에 관한 판단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비용이 700,000원에 불과함에도 원고가 근저당권 설정비용으로 2회에 걸쳐 7,000,000원을 받았으므로, 원고에게 그 중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인한 부당이득금 3,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게 근저당권 설정비용으로 7,00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반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원고의 본소청구 중 주위적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도현